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교육시 아동학대 배제〉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7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교육시 아동학대 배제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6. 1.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기초학력 보장법」 상 학습지원교육시 아동학대 배제(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초학력 보장법」 상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교육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제21049호 초·중등교육법<br>일부개정법률<br>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br>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br>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br>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br>위로 보지 아니한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 | 법률 제21049호 초·중등교육법<br>일부개정법률<br>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u>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u><br><u>의 성장·발달을 위하여</u><br><u>「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u><br><u>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sup>1)</sup>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sup>2)</sup>.
- 동 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도입된 것으로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교원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있음<sup>3)</sup>.
- 또한, 개정 「초·중등교육법<sup>4)</sup>」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은 ①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11.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건수는 2,269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는 2,098건으로 나타남[의안번호 211689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4)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 등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 등 적용 배제 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li> <li>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li> <li>3. 개별학생교육지원</li> <li>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li> </ol> |
|--------------------------------------------------------------------------------------------------------------------------------------------------------------------------------------|

□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sup>5)</sup>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 등으로 보지 않도록

- 5)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록 하려는 것으로,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실제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26.2.3.) 총회에서는 대정부 제안으로 보호자의 비동의로 인한 학습지원교육 위축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sup>6)</sup>, 이의 해결을 위해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였음.

□ 따라서 원활하게 「기초학력 보장법」 상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 등 적용 배제 사유들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의 권리(인권 및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교육은 그 제도적 취지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sup>7)</sup>, 기존의 학대행위 적용 배제 사유와는 제도적

---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출한 대정부 제안서('26.2.3.)에 따르면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보호자 부동의율('24년)은 44.4%(초 39.4%, 중 23.6%, 고 70.3%)로 파악됨

7) 「기초학력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법체계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 등 적용 배제 사유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sup>8)</sup>, 법률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교육은 개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보호자의 비동의와 민원 등으로 학습지원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 실시되는 학습지원교육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학습지원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6 |

8) 학생에 대한 제지행위, 학생에 대한 분리행위,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행위 등의 경우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